

『 2026년 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사업』 XR 융합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우수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사업화 성과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XR 융합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추진 목적

- 전남 가상융합콘텐츠 기업의 우수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극대화
-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 지역 XR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2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및 적용규정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ICT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대한 세부지침(7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전남기관이 정하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최신 규정을 따름

□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6년 XR 융합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6. 4. 15.(수) ~ 4. 30.(목)까지
- 지 원 금 : 총 20,000천원
- 지원규모 : 4개 과제(과제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소요실비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진행 완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비정산(사후정산)
- 지원분야 : XR융합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 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XR융합콘텐츠 전시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전남 도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전남 지역 내 XR융합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보유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요약)

지원분야	지원내용
홍보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융합 콘텐츠 온·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마케팅 활동 직접 비용 · 온라인 광고(바이럴 마케팅, 타겟 마케팅, 배너광고, SNS 광고·홍보 등) · 매체홍보(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 등) · 프로모션 및 이벤트(홍보 극대화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 가상융합 콘텐츠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 홍보물 제작(홍보영상, 브로슈어, 리플렛, APP 제작 등) · 브랜드 개발(BI, 브랜드 네이밍 개발 등) * 단순 홍보 물품 구매 제외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직접비용 · 부스 임차료(기업 부스 임차비용) · 장치비(네트워크, 전기시설, 비품설치 등) · 참가 등록비(전시회, 컨퍼런스 등) / 기타 운송비, 통역비 등 * 단순 참가비 제외, 지원항목 외 비용 기업부담(항공료 및 체재비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및 해외시장 사전 분석 ·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가상융합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리서치 등 · 타겟 국가 대상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 글로벌 해외진출 사업 연계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타 사업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유망기업 글로벌 협력 지원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컨설팅 지원

□ 과제별 최종 사업목표

목표명	성과목표	검증방법
홍보·마케팅 및 시장 진출 지원	1건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1건	출원·등록증

※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 목표 미달 시 사업비 미지급 / 타 사업과 성과중복 불가

※ 결과보고 시, 세부계획서 내의 목표성과 대비 도달 내용 등 명기 필수

※ 신청시 마케팅 지원사업비 내에서 다중지원 가능

(예시 : 홍보마케팅,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분야 다중지원 가능)

4 추진일정 및 접수 안내

○ 추진일정

접수 및 신청	사업공고 및 접수	4. 15.(수) ~ 4. 30.(목)	진흥원 홈페이지 (방문 및 등기접수)
	↓		
	선정평가	5. 12.(화) 예정	진흥원(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선정평가 결과안내	선정평가 후 최대 5일 이내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 수행	↓		
	계획서 수정	선정된 기업은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서 수정 및 보완	진흥원 ↔ 선정기업
	↓		
	협약 체결	선정평가 결과안내 후 최대 10일 이내	진흥원 ↔ 선정기업
사업 수행	↓		
	과제 수행	협약일 ~ 11. 19.(목)	수행기업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
	↓		
	결과안내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후 최대 5일 이내	진흥원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결과평가 결과안내 후 최대 10일 이내	진흥원 ↔ 수행기업
사후 관리	↓		
	성과관리	진흥원 요청 시 지원성과 및 실적자료 제출	진흥원 ↔ 수행기업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 고 처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 공고기간 : '26. 4. 15.(수) ~ 4. 30.(목)까지
- 접수기간 : '26. 4. 15.(수) ~ 4. 30.(목), 17시 마감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우선 접수(hwa3384@jcia.or.kr)**
 - 원본 제출 필수(방문 및 등기접수)
 - 신청서(한글파일)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 필수
 - ※ 압축파일명 : 2026년 XR융합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_기업명**
- 담 당 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팀 신행화 책임
- 접 수 처 : (58325)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77 3층 운영실 콘텐츠융합팀 신행화 책임 T. 061) 339-6963
- 제출 서류

구분	내용	부수
공동서류 (필수)	1. [서식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마케팅 수행계획서	각 1부
	2. [서식 2]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3. [서식 3]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약서	
	4.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사업비 산출 증빙 견적서(견적서, 비교견적서, 업체확인자료 등)	
	7. 판매 실적(계약서 등),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GS인증, 특허등록·출원, 기타 인증 등) 등 보유 상용화 제품 증빙자료(해당시)	
	8. 기타 실적 증빙(해당시)	
※ 제출서류 및 직인 날인 누락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협약체결 시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제출 서류 목록(협약체결 시 필요)

개별서류	1.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씩 제출)	
※ 협약 체결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격사유 확인되거나 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세부사항

구분	주요내용
지원 방식	○ 사후정산 - 사업기간 종료기간까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 목표 달성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결과평가 진행 - 증빙자료 검수 후, 결과평가 결과 '완료'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비정산(사후지급) ※ 최종 목표 미달성, 결과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불인정 등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출 증빙	○ 증빙서류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검수검사 확인서, 제작물품 증빙사진 등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전체 ※ 지불한 금액의 정확한 지출 확인을 위함(증빙이 안 될 경우, 지원 불가)

※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사업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회계정산 후 회계검증보고서 제출(필수)

※ 결과평가 시 추가로 요구되는 성과물, 보완, 증빙서류 등 제출 필수

□ 지원 제외(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수행기업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 동시 수행 가능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3,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수행기업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
 - 평가 이후에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6 평가절차 및 기준

□ 기업 선정

-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평가점수로 선정
- 평가위원회 : 가상융합산업 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 구성
-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기준) 콘텐츠의 우수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장진출의 실현 가능성 > 기대효과’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최종 평가점수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 ※ 평가별 평균점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 없이 절사
 - ※ 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선정
 - ※ 모집 기업 미달시 재공고 후 선정평가(서면)로 선정 진행

□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I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콘텐츠 마케팅 전략(목표, 계획 등)은 구체적인가	15
		○ 마케팅 지원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은 적정한가	10
		○ 마케팅 제품에 실감콘텐츠 기술이 반영되었는가	5
II	콘텐츠의 우수성 (30점)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는가	10
		○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요소가 있는가	20
III	시장진출의 실현 가능성 (30점)	○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는가	10
		○ 시장 진출 후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20
IV	기대효과 (10점)	○ 성과목표의 향후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가	5
		○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수출 및 매출 증대, 국내외 비즈니스 역량 함양 등)	5
합 계			100

□ 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사업비는 반드시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 협약 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 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흥원으로부터 상시 집행 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 내역을 보완하여야 함(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 조치)
- 지원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평가 후 ‘보통’ 판정 이상 기업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 및 집행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 협약 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과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과제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 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진흥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진흥원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

□ 결과물 제출

- 진흥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과제 결과보고서 등) 1부 및 상용화 제품 등 제작 결과물을 과제 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됐을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수행기업이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기업 육성센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전시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은 과제 주관기관이 소유하되, 비영리 목적으로 관리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함
-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제재조치
 - 결과평가 “실패”, 협약해지(중도포기)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 수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